

[붙임 #3]

		물품구매표준계약서(안)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 약 자	발 주 처	한국조폐공사															
	계 약 상 대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주 소 : 대 표 자 :															
계 약 내 용	물 품 명	Inlay(IC주민등록증) 구매															
	계약금액(총액)	금 원 (금 원. -VAT포함)															
	계 약 보 증 금	금 원 (금 원)															
	지 체 상 금 률	납품금액에 대해 1일 0.075%															
	납 품 일 자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납 품 장 소 및 인 도 조 건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 10로 7 한국조폐공사 ID본부 지정장소 입고															
	기 타 사 항	인지세 및 계약보증보험금 납부, 보안물질 생산관련 업무 준수 철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아울러 아래 붙임서류상의 계약명과 계약담당자,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보증금액은 위와 동일함을 확인하고, 각 붙임서류를 모두 읽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따라 붙임서류의 계약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첨부서류 : 1.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1부. 2.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3.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 각 1부. 4. 제조물 책임법 이행서약서 1부. 5. 유해물질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1부. 6. 안전보건계약 특수조건 1부. 7. 납품대금연동 및 상생결제 안내 1부. 끝.																	
2026년 월 일																	
계약담당자		한국조폐공사		관 리 이 사 유 만 재 (인)													
계약상대자				대 표 (인)													
물 품 내 역 서																	
<table><tr><td>품명</td><td>규격</td><td>단위</td><td>수량</td><td>단가 (원)</td><td>금액 (원)</td></tr><tr><td>PC수지제품</td><td>Inlay(IC주민등록증)</td><td>SHT</td><td>30,000</td><td></td><td></td></tr></table>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원)	금액 (원)	PC수지제품	Inlay(IC주민등록증)	SHT	30,000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원)	금액 (원)												
PC수지제품	Inlay(IC주민등록증)	SHT	30,000														

<첨부 #1>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1.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2호, 2026.1.2., 일부개정]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5.9.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15.9.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9.21.>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5.9.2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1.>

④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9.2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6.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개정 2015.9.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을 및 지수조정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을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을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 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 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1.,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5.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1.1.>
 -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조를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 (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 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

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1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0.9.8, 2018.12.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개정 2025.12.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잔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도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잔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잔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7.3.)

① (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09. 6.29)이후 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1.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조폐공사가 행하는 Inlay(IC주민등록증) 구매 계약에 적용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수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제3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로서 동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3조(납품 및 검사) ①계약서(“납품지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납품일자는 계약업체에서 공사가 지정한 장소에 실제로 계약물품을 납품(설치)완료하는 기한으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 산출 기준일이 된다. 단 납품일자가 공휴일이거나 공사 휴무일 경우에는 맨 처음 도래하는 근무일로 한다.

②납품한 물품의 검사는 전수검사 품목으로 검사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물품의 성질상 검사 시 계약상대자의 입회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③공사의 사정에 따라(전수검사 등)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의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검사기간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최초 납품일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납기지연 및 불량품 납품으로 발생하는 사고 및 제반사항에 대한 손해액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⑥제1항의 지체상금계산 시 지체일수 계산기간은 계약서 또는 납품지시서(요구서)상의 납품기한 익일부터 최종 검사합격일까지로 한다.

제4조(포장)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규격서의 조건으로 포장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의 전부를 규격서에 정한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하고, 전수검사가 아닌 샘플링검사로 인해 합격한 물품의 사용 중 발견된 미달품에 대하여는 계약상의 규격으로 조속히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②상기 ①항의 규격 미달품으로 인한 우리공사의 제품 납품지연, 또는 불량품 납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및 제반사항에 대한 손해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의 특성상 납품 시 검사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내부 품질 등)에 대하여 검사 후 공사에서 사용 중 발견된 부족량 및 품질 불량품은 공사의 요구 시 최단기간 내에 대체납품 하여야 하며, 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은 물품구매계약일반

조건 제21조 각 항을 적용한다.

④제1항의 수량 및 품질의 보증기간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관계없이 납품 물품의 전량 사용 시까지로 한다.

⑤품질불량으로 인한 물품은 전량 보상하여야 하며 기타원인으로 인한 불량품은 최대 보상 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위·변조한 가격증빙자료를 제공하거나 열람케 함으로써 계약금액이 적정치 못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정당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또는 타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납기 조정) 계약담당직원은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공사 측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계약보증금은 반환한다.

제8조(계약내역 변경) ①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계약내용(수량 및 납기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되는 수량의 단가는 계약단가에 의하고 계약단가가 없는 동일품명의 신규품목은 변경계약 당시 신청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승낙서를 제출하거나 계약당사자 간에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감액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대가지급) ①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1항의 청구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로 갈음 할 수 있으며,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2항의 대가지급기한 계산 시 기산일은 계약담당자가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 하고 청구서 (세금계산서 포함)가 검사완료 전 접수된 경우의 기산일은 검사 합격일로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납품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가지급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

제11조(분쟁) ①계약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상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공기업·준정

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규정상의 강행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을 적용하고 이에 명시적 사항이 없을 시에는 우리공사의 내규를 우선 적용하여 해결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자료협조)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1조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자료로 활용코자 계약담당자가 가격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시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3-1.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계약 담당 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IC외국인증 카드 열압착용 플레이트 구매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입찰참가업체가 계약정보 및 영업비밀, 기술보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요구 및 부패행위자 교체 요

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익을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의 청렴의무) ① 공사는 청렴계약제를 위반하여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수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및 형사고발하며, 해당금액을 몰수하여 공여자에게 반환한다.

② 공사는 공사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업체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업체가 신고 내용과 관련된 공사 임직원에 대하여 계약업무상 기피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업체의 거래실적 등을 점검하여 현저한 불이익 처분이 발생하는지를 감시하여야 한다.

3-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 가. 사회적 기준
 -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다.

습니다.

-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할 것입니다.
-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3-3. 한국조폐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공사제출용)

한국조폐공사에서는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Clean KOMSCO』 구현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물품구매의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공사 임직원의 비리행위를 제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을 것이며, 신고업체가 관련 임직원의 직무상 배제 등 보호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징계 및 몰수 등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한국조폐공사와 계약 체결, 공동사업 추진 등 공사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장업체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제한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직원이 계약을 집행할 경우, 해당 직원의 주식은 「임직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 귀하(계약서 1페이지 계약상대자에 따름)

4. 제조물책임법 이행 서약서

한국조폐공사 관리이사 유만재(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과 _____대표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이 계약 체결한 Inlay(IC주민등록증) 구매(“제조”, “가공”
을 포함한다) 물품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1. 제조물책임 : 물품을 제조 또는 공급한 자가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 및 관련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
2. 물품안전 : 제조자가 개발, 생산한 물품이 시장에서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발생 시키지 않도록 제조물의 관련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자에게 있어 안전한 물품을 만들기 위한 활동.
3. 결함 :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용, 물품표시, 물품이 유통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조물이 통상 지녀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제2조 (물품안전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에 대한 전 생산공정에 걸쳐 일관된 물품안전체계를 유지하여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물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1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구입하는 외주 자재의 물품안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조 (물품안전을 위한 실시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한 물품에 대한 기록 및 증빙서류를 유지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안전을 위하여 해당 작업자를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청시 물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제조물책임 사고 처리 기준)

1.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제조물책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현장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조물책임 사고를 처리하고, 그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 후 10일 이내에 사고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사고보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서 상호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배상책임)

1.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의 결함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 사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계약담당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 이외의 피해자에게 직접 그 손해를 배상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다음사항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천재지변에 기인한 경우
 - 2) “계약담당자”의 설계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제작 납품한 경우

제6조 (서약서의 유효기간)

1.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물책임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의 보증기간은 법 제7조에 따른다.
2. 본 이행서약서를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계약상대자” 서명 날인 후 각각 한 부씩 보관한다.

제7조 (준용법률)

본 이행 서약서에 특별히 약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법률제 14764호)에 따른다.

제8조 (관할의 합의)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소송의 재판 관할은 “계약담당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5. 유해물질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 유해물질 비함유·비사용 확약서(국문)

유해물질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제출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1. 공급정보				
제품명		공급수량	공급일	비고
2. 공사 유해물질 관리 기준 항목(첨부 참조)				
재질	유해물질 항목			제한기준 준수여부
펄프	폼알데하이드, 중금속 함량, 유해원소 용출(땀액), 유기주석화합물, 아릴아민, 방염제, 알러지성 염료, 발암성 염료, 형광증백제, 염소화페놀류			준수/미준수
합성수지	폼알데하이드, 중금속 함량, 유해원소 용출(위액), 프탈레이트가소제 비스페놀A 용출			준수/미준수
금속	중금속 함량, 유해원소 용출(위액)			준수/미준수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른 유독물,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함유 여부				
구 분	유독물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준수 여부	비함유 / 함유 ()	비함유 / 함유 ()	비함유 / 함유 ()	비함유 / 함유 ()
※ 분류에 따른 화학물질을 함유했을 경우 그 물질에 대하여 작성(허가물질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확약 내용	확약서에 따라 공사 유해물질 기준 등 이외의 다른 물질이 제품의 원료, 원료의 보존제, 제품의 제조 과정 등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함유되거나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확인한 내용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유해물질 비합유 · 비사용 확약서(영문)

Certificate of noncontained-nonuse				
Submitter	Company		Business Registration No.	
	Representative		Name & contact	(e-mail:)
	Address	(Phone No.:) (Fax No.:)		
1. Supply Information				
Product Name		Supply quantity	Supply date	Remarks
2. Test item(Refer to annex)				
Products	Item			Compliance with restriction criteria
Pulp	Formaldehyde, Heavy metals, Dissolution (Artificial sweat test), Organic in compounds, Arylamines, Flame proofing agent, Allergenic Dyes, Carcinogenic Dyes, Fluorescent whitening agent, Chlorinated phenols			compliance/ not compliant
Synthetic resin	Formaldehyde, Heavy metals, Dissolution (Simulated gastric fluid), Phthalates sum Bisphenol A			compliance/ not compliant
Metal	Heavy metals, Dissolution(Simulated gastric fluid)			compliance/ not compliant
3. Check the presence of "Toxic substance", "Permission substance", "Restricted substance" and "Prohibited substance" under the 「Act on registration, evaluation, etc. of chemicals」 & 「Designation of Toxic substance, restricted substance & prohibited substance」				
Categorize	Toxic substance	Permission substance	Restricted substance	Prohibited substance
Check compliance	noncontained / contained ()	noncontained / contained ()	noncontained / contained ()	noncontained / contained ()
※ If a chemical substance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is included, write it for the substance(submit relevant evidence for permission substance)				
Commitment details	The commitment confirmed that no hazardous substances were contained or used in the raw materials of the products, preservatives of the raw materials, or in the manufacture of the products. If anything other than what you have confirmed is confirmed, you will not dispute any legal action.			
Month. Day. Year. Representative : (Signature)				

6. 안전보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보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조폐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하수급인 포함, 이하 같음)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안전사고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아래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 계약에 있어 우리공사 사업장[우리공사가 지정한 장소로서 우리공사가 지배·관리 하는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으로 정하는 장소 포함, 이하 같음] 작업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에 적용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및 고용노동부고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우리공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안전담당부서에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우리공사 안전수칙 확약을 위한 [안전작업 약정서

(서식1)]에 서명한 후 착공 전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우리공사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교육·훈련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하수급 포함)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하수급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우리공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우리공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 규칙)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안전규칙 별표7)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해서 아래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도급승인 대상물질의 취급 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안전개선요구서 (서식2)]할 수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 등) ① 우리공사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수행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작업안전분석(JSA, Job Safety Analysis)등을 시행하고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위험성평가 항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지 해당 작업근로자를 참여시켜야하며,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 또는 작업안전분석 활동은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추정·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우리공사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3. 우리공사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정전작업, 중량물·중장비 취급작업, 방사선 사용작업, 굴착작업, 잠수작업, 화학물질 취급작업의 9가지 안전허가 대상작업 및 일반위험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안전작업허가서 (서식3)]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 TBM(Tool Box Meeting)을 철저히 시행하고, 위험성평가표 또는 작업안전분석표를 활용하여 관련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 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건설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그 외 분기 1회 이상)

② 우리공사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1주일에 1회 이상(건설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정요구[안전개선요구서 (서식2)]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점검에 계약상대자의 참여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위생시설 사용을 우리공사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 시 적극 협조하고 측정결과에 대해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제7조②항에 따른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시 작업자 편성을 2인 이상 1조로 하여 단독작업이 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작업 전 단독으로 현장에 투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감시(유도)인을 배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작업(적당한 투하 설비가 있는 경우 제외)
2.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시행하는 작업
3. 절연이 되지 않은 충전부나 그 인근에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하는 조치가 곤란한 작업
4. 잠수작업
5. 밀폐공간 작업
6.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7.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화물이나 그 차량계 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시행하는 작업
8.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으로 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시행하는 작업(접근을 막는 출입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는 제외)
9.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10. 기타 안전보건규칙에서 감시(유도)인 배치가 필요하다고 정한 작업

③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우리공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신문고(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신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전신문고를 적극 활용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안전사고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를 우리공사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우리공사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과 미사용 금액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2조(안전사고 발생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사고발생 사실을 우리공사에 즉시 보고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 종료 후에는 당일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고 파악사실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제출 시에 그 사실을 우리 공사 공사감독부서 및 안전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 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안전수칙 위반 시 조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착공 전 우리공사 안전작업 약정서(서식1)에 서명·제출함으로써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우리공사는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안전개선요구서(서식2)를 발행 하고 약정서에 따라 제재 할 수 있다.
- ③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의 안전개선요구서를 받은 근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안전작업 약정서(필수 안전수칙 위반자의 제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우리 공사의 제재를 해당근로자가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요구서(필수안전수칙) 외 기관별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관별 자체 제정한 제재기준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다.
- 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를 위해 소속 근로자(일용직 포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불법파견 여부 확인을 위해 우리공사에서 요구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계약상대자는 ①부터 ⑤까지의 규정에 의한 우리공사의 조치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14조(안전관리책임자 교체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우리공사로 부터 안전개선요구서를 발행받은 경우 우리공사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등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별점 부과기준 및 교체기준

구분	구분	별점	교체기준
안전 사고	중대재해	100점	누계별점 100점 이상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등 안전관리책임자 교체
	부상 (1개월 이상 요양)	20점/명	
	안전개선요구서	5점/건	

주1)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천재지변 등) 사고의 경우 별점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치

가. 제1호 사항 발생 시 공사감독은 계약상대자에게 별점부과 사실을 알리고 기관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한다.

나. 기관 안전관리자는 [별첨부과 현황 (서식4)]을 기록 관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공사의 조치를 수용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5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우리공사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우리공사는 당해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①항부터 ②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우리공사의 조치를 수용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안전사고 조사) ①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 중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필요시 본사 안전보건담당부서 주관으로 소속 기관 및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고 해당 안전사고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② 안전사고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재해자 및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작업동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반에 참여를 보장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고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합동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위험작업 작업중지요청(서면으로 감독부서에 제출) 또는 안전신문고(위험신고)를 통해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위험신고를 할 경우 우리공사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로 위험 작업 일시중지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 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해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우리공사가 보유중인 가스측정기, 공기호흡기, 등 안전용품 및 장비를 공사기간동안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우리공사는 기관별로 계약상대자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계약상대자의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여 아래 각호를 협의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 종료되는 작업과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이하 간헐적 작업의 계약상대자는 제외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안전연락방법, 재해 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원·하청 노사 관계자는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에서 논의된 안전은 필요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안전근로협의체는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공사기간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설계의 보강, 계약기간 연장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우리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20조(기타) ① 본 안전보건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우리공사는 국가 및 우리공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안전작업 약정서

본 약정서는 한국조폐공사(ID본부) 내에서 작업을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쾌적한 작업장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工事 및 작업 시작에 앞서 약정한다.

1. 업체는 작업 책임자를 고정 입회토록 하여 작업장의 안전을 감독 및 책임을 진다.
2. 업체의 대표는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시작 전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안전화, 안전모 등 작업보호구를 착용 한 후 작업 하여야 한다.
4. 회사 내 전기시설물 취급 시 담당부서의 사전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전기안전 수칙을 준수한다.
5. 가급적 화기작업을 피할 것.
가. 용접보다는 기계적 볼트작업
나. 토치, 원반형 톱보다는 기계적 배관 절단기 사용
다. 납땜보다는 나사식 또는 플랜지 방식 배관 사용
라. 톱 또는 토치로 절단하는 것 보다 수동유압전단기 사용
6. 화기작업 금지구역
가. 발화성 액체, 인화성가스, 가연성 먼지/금속 취급 공정 또는 설비
나. 가연성 플라스틱, 샌드위치패널 또는 발포 플라스틱 단열재를 사용한 칸막이, 벽체, 지붕 등
다. 위험물(산화제, 폭발성 물질 등) 취급 장소
7. 가스 봄베이 사용 시 고정하는 적치대를 준비 후 작업에 임한다.
8. 공사업체는 工事 전 화기취급 장소 주변에 대한 인화물, 가연물, 위험물 등을 제거 하여 화재위험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작업현장에는 불티감시자를 명확히 지정하여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10. 화기작업 종료 후 30분 ~ 60분 후 공사(工事)현장을 재확인하여 잔여 불티가 재 발화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필수 안전수칙 위반자의 제재기준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상주(자회사 등)직원	단기(일반공사)근로자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벌점 부여
동일사항 2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1주일 안전업무 체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벌점 부여 및 현장소장 경고

20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한 국 조 폐 공 사 귀중

안전개선요구서

감독부서		회 사 명	
공 사 명		개선대상자	
장 소		발 행 일 시	20 . . . :

발부절차 : 관찰 → 인지 → 동의 → 발부

1. 필수안전수칙

번호	수칙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전 안전교육 이행 (사업소 안전체험장 교육 포함)	6	전기작업전 전원차단 및 검전
2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정리정돈
3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체결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안전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9	위험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2. 위반 사항 :

상기 안전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오니 즉시 조치 후 결과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자(담당자) : 관리감독자 (인)

발행자(관리자) : 안전관리자 (인)

안전작업 허가서

작업(공사) 담당	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작업(공사) 명			
작업(공사) 개요	작업에 대한 설명 기재		
작업(공사) 기간	~ (일간)		
작업(공사) 장소			
작업(공사) 인원	외 명		
업체명/전화번호	☎:		
법규 해당여부	안전인증 대상설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설비	

- 안전인증 대상설비 :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톨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설비 :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파쇄기, 절단기, 혼합기, 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기, 형삭기, 밀링기),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 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인쇄기
- 위험요인 파악 -

공사 주관부서 사전안전성검토			(공사책임 관련부서명)	
구 분	해당여부	공사업체 사전 주지사항	검토의견	허가 여부
일반 및 고소작업 (2m 이상)	해 당 ()	안전벨트 구비 및 착용 ()		
	미해당 ()	안전모 구비 및 착용 ()		
		사다리/작업발판 사용 ()		
		추락방지망 설치여부 ()		
화기작업	해 당 ()	소화기 비치 ()		
	미해당 ()	탄소포(비석면포) 비치 ()		
		불티감시자 지정/배치 ()		
		가연성물질 유무 확인 ()		
밀폐공간작업	해 당 ()	안전보호구 착용 ()		
	미해당 ()	관리자 지정 배치/감시 ()		허 가 () 미허가 ()
		산소(18% 이상) 측정 ()		
		산소호흡기, 마스크 착용 ()		
정전작업	해 당 ()	잠금장치 시건, 표지부착 ()		
	미해당 ()	주차단기·현장스위치 차단 ()		
		시 상호확인 후 조치		
굴착작업 (중장비 사용)	해 당 ()	자격증 소지 여부 ()		
	미해당 ()	현장책임자 감독 ()		
		신호수 배치 여부 ()		
		매트 등 부속장구 ()		
방사선사용	해 당 ()	비인가자 출입제한 ()		
	미해당 ()	위험경고, 표지 부착 ()		
		자격증 소지여부 ()		
사용화학물질	물질명 :			

- 작업 전 반드시 설비 전원차단 및 동력 차단상태 확인

※ 본 서식은 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가능

별점부과 현황

업체명	계약기간	별점	사유	확인자
○○설비	2000.00.00.~ 2000.00.00.	5	작업전 안전교육 미실시	○○○ (공사감독)

※ 본 서식은 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가능

8. 납품대금연동 및 상생결제 안내

1.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나.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 여부 해당시 **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표준연동계약서] 및 [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 다.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전자계약서 내 포함합니다.
- ※ 주요 원재료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 가. 본 계약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나. 계약 체결 후 **우리은행·KEB하나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과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쳐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1】

표준 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하도급계약등의 체결 일자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의 하도급계약등과 관련된 하도급대금등 연동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2. “주요 원재료”란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란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조정요건”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변동한 비율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그 변동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5.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하도급대금등 연동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한다.
6. “조정일”이란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이하 “목적물등”이라 한

다)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을 말한다.

9. “반영 비율”이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등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의 용어의 뜻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이 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이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라 한다)로 한다.

제4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원재료의 판매자가 수급사업자등에게 판매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가격으로서 원사업자등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2. 원사업자등이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판매자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등이 수급사업자등에 판매한 가격
3. 그 밖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이 합의하여 정한 가격

제5조(「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작성) ① 원사업자등은 수급사업자등과 합의하여 【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라 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② 원사업자등 또는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해당 자료를 이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하도급대금등 연동 절차) ①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등을 산출한다.

② 원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한다.

③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변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④ 원사업자등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수급사업자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해석 등) ①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는 이 계약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은 원재료 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하도급대금등 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한 원재료에 대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금지행위) 원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원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한국조폐공사
전화번호 : 1577-4321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대표자 성명 : 성창훈 (인)
사업자(법인)번호 : 314-82-00583

수급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참고 2】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9.1. 반영비율	
10. 기타 사항	

※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원재료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3.~10.까지 중 공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할 수 있음

【참고 3】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조정일	대상 원재료	원재료 가격		하도급단가/대금		조정대금 반영일	원사업자등 확인	수급사업자등 확인
		기준 시점	비교 시점	조정전 금액	조정후 금액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